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안내



아래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6.30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청약자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는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필수	해당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본인 방문 시	신분증	●	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	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 사실확인서	●		본인	발급용도 :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
	인감도장	●		본인	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, 대리인 위임 불가
	주민등록표등본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※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출입국사실증명원	●		본인	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청약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한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주민등록표등본		●	배우자	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●	배우자	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복무확인서		●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●	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(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)
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●		본인 및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-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, 성명 및 생년월일 표시로 발급
	소득증빙서류	●		본인 및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또한,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) 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] 참조]
	부동산 소유현황		●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j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[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(부동산 소유현황)] 참조]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	●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[임신진단서 이외 불가]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각서		●	본인 또는 배우자	[견본주택 비치] 임신중진 경우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		●	본인 또는 배우자	자녀가 입양의 경우
	비사업자 확인각서		●	본인 및 세대원	[견본주택 비치]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※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중 소득이 없는 자
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●		본인	[견본주택 비치]
	대리인 방문 시 추가 제출서류	위임장	●		본인
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	●		본인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위임용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
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	●		대리인	- 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 - 서명 또는 날인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'주민등록번호',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및 '주소변동이력'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

■ **신호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**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계속 근무자 / 전년도 이직자	- 재직증명서 -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※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	· 해당직장 · 해당직장/세무서	
	근무	금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이직자	· 해당직장	
	휴직	전년도 일부기간 휴직	- 재직증명서 - 정상근무 개월에 대한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	· 해당직장
		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	- 재직증명서 -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	· 해당직장
		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(계속 휴직)	- 재직증명서 - 본인과 동일한 직장/직급/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월평균 소득 추정 ※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직 전 정상재직기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	·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	- 재직증명서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	·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사업자등록증 사본	· 세무서	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	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서(부분)	· 국민연금공단 · 세무서	
	신규사업자	-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[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(예정)신고서] - 사업자등록증 사본	· 국민연금공단 · 세무서	
	법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법인등기부등본	· 세무서 · 등기소	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	· 해당직장/세무서	
기타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· 행정복지센터	
	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	· 해당직장 · 국민연금공단	
무직	전년도 1월 1일 ~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	-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-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※해당 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(일용직 근로자 포함)에 해당할 경우 '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' 소득입증제출서류를 준용함	· 해당직장/세무서	
	소득이 없는 경우	- 비사업자 확인각서 - 사실증명(소득 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)	· 접수장소 · 세무서	

※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

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
※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■ **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(부동산 소유현황)**

해당자격	자산입증 제출서류		발급처
'부동산 소유 현황'이 있는 경우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 소유 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등기부등본(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)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등기소 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) · 행정복지센터 · 위택스 (www.wetex.go.kr)
	추가 (해당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(개별)주택공시가격 확인원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-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-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('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'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	
'부동산 소유 현황'이 없는 경우	필수	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	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

■ **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**

해당서류	필수	해당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해외체류 증빙서류	●	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→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(①,②모두 반드시 제출) <p>※유학,연수,관광,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</p> <p>※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</p>
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	●	본인 및 세대원	<p>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※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</p>
출입국사실증명원	●		세대원 및 미성년자녀	<p>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</p> <p>※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</p>